

고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959
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6. 3. 20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- 1981년 1월부터 고성군 수입증지 판매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수입증지 판매시 판매인에게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게 100분의 5로 인상함. (안 제19조)

3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 2005-660호(2005. 12. 29. ~ 2006. 1. 18.)
- 의견 및 제출사항 없음

나. 관련법령

-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제19조(판매인 수수료)

4. 본문 : 덧붙임과 같음

고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의 제명 “고성군수입증지조례”를 “고성군 수입증지조례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 100분의 3으로 ” 를 “ 100분의 5로 ” 한다.

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명 : 고성군수입증지조례</u></p> <p>제19조(판매인수수료)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<u>100분의 3</u>으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. 다만, 계기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	<p><u>제명 : 고성군 수입증지조례</u></p> <p>제19조(판매인 수수료) ----- -----<u>100분의</u> <u>5</u>로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[별지 제3호 서식]

수입증지 매수(출납, 보관, 교환, 환매) 청구서

구 분 권 종	재 고 량		청 구 (교환, 환매)량		공제액 (청구액의 5/100)	현금납부 (지불)액	비 고 (사 유)
	매 수	금 액	매 수	금 액			
계							
10원							
40원							
50원							
60원							
100원							
200원							
300원							
400원							
500원							
1,000원							
5,000원							
10,000원							

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매수(교환, 환매)를 청구합니다.

20

청 구 인

(서명 또는 날인)

